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17 선고 2019가단4425 판결 [임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5. 29.

판결 선고 2019. 7. 17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0,359,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 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오민석

별지